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8월 31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8월 13일

나. 제출자: 송준효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의결(2021.8.30.)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송준효 의원)

가.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의 정의와 맹견의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설치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책임 있는 동물 사육 문화 조성 및 동물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맹견”의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
- 2) 동물보호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추가함. (안 제3조)
- 3)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위원의 구성(제2항 후단), 위원의 임기(제3항), 참석위원 수당 등(제8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 4)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감독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지정기간을 적정범위로 개정함. (안 제8조~제9조)
- 5) 맹견의 격리 조치 등 맹견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
- 6)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설치 등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19조)
- 7) 소요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 (안 제20조)
- 8)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가. 개정취지

-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제2호 “등록대상동물”을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로 개정하였으며,
- 같은 조 제3호에 맹견의 정의를 추가하였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안 제3조의 제목을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로 하고, 제3항에 구민의 책무를 신설
- 안 제5조의 동물 복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서는
 - 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 제3항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제8항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9항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회의참석 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안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 제5항의 지정기간을 기존의 2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 같은 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에 맞게 개정하였음.

○ 안 제15조는 맹견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 제1항에서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2항에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안 제19조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것으로
 - 기존 제1항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것을 제4항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였고,
 - 제2항에서 길고양이의 중성화 및 포획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 제3항을 신설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0조는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그 내용을 삭제하였음.

□ 동물보호법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 종합 의견

- 강서구는 2021년 7월 말 현재 등록 동물은 29,606마리이며, 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등록 현황 자료(2020. 6. 30.)에 따르면,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3위¹⁾를 차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및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개 물림 사고로 1만1천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루어졌으며, 하루 평균 6건 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연도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최근 5년간)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총 계
개 물림 사고 건수	2,111	2,405	2,368	2,154	2,114	11,152
일일 평균 사고건수	5.78	6.59	6.49	5.90	5.79	6.11

※ 소방청 2021. 5. 24.자료

- 또한 길고양이 문제 역시 자발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과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예방 및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과 급식소 설치가 주된 내용으로,

1) 서울시 전체 438,606마리 중 송파구 27,408마리, 강남구 27,180마리, 강서구 26,362마리(전체의 6%)

-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며, 개정의 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다만, 맹견뿐만 아니라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사고방지를 위하여 등록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적절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배려와 책임 있는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반려동물과 길고양이 등 각종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정책의 집행과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 · 양서류 ·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 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도로 ·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 · 유기동물”이라 한다)
-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 · 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 · 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이하 “시 · 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 · 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14조(동물의 구조 · 보호) ① 시 ·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 ·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 · 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 · 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

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공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 · 도와 시 · 군 ·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